

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규정

제정 2020. 12. 24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‘생체재료개발센터’(Biomaterial R&BD Center);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19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의 목적인 전임상테스트베드 운영[비임상시험수탁기관(Non-Clinical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)]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부 보건 산업과 관련된 각종 R&D 사업,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책사업 및 산학협력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초연구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비임상시험수탁기관 사업 운영(이하 비임상 CRO라 한다.)
- ②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
- ③ 정부, 지자체 및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(용역 포함) 수행
- ④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·실습시설 운영
- ⑤ 교원(비전임 포함)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수행
- ⑥ 대면 및 비대면 교육/인력양성사업 수행
- ⑦ 센터 소속 인력(교수, 직원, 학생 등) 역량 강화 지원, 현장 국내외 실습·교육·학회 참가 지원, 실험 지원,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 수행

제4조(협동연구 등) ① 수탁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협력업체와 참여기업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기능별 추진 부서를 둘 수 있고,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효율적인 비임상 CRO 운영을 위하여 수의외과학전공자 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 중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업무를 총괄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, 이하

"IACUC" 라 한다)를 생체개발센터 내에 설치한다.

④ 센터는 AAALAC-I (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)의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수의사(AV, attending veterinarian)를 둔다.

제6조(교수 및 연구원)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- ① 겸임교수: 전남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 자
- ② 객원교수: 센터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타 대학 전임교원이나 산업체,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임용된 자
- ③ 학술연구교수: 센터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총장이 임용한 자
- ④ 선임연구원/책임연구원: 센터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
- ⑤ 연구원/전임연구원: 센터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으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
- ⑥ 연구보조원: 센터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과정에 재학하거나 학사학위 미 취득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
- ⑦ 기 타: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합당한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센터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
 2. 예산과 결산
 3. 센터 규정의 개정과 폐지
 4. 운영세칙 제.개정과 폐지
 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⑦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임시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3장 회계

제8조(수입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학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
② 센터 사업에 의한 수입금

③ 센터 소유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·실습시설 장비에 대한 사용료

제9조(보상금의 지급) ① 센터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(수당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지출) ① 센터의 관리·운영비

② 센터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(수당)

③ 센터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
④ 센터 시설 및 장비 관련 비용

⑤ 기타 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칙(2020.00.0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